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제2014 - 43 - 151호(사건번호 : 201407조사012)

안 건 명 (주)디비고닷컴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주)디비고닷컴(대표 김보성)  
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9길 12, 역삼동모노타워

의결연월일 2014. 9.24

### 주 문

1.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,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.
2.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. 이때,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< 인터넷 홈페이지(www.dbgo.com) 공표 문안 >

제목	(주)디비고닷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내용	<p>저희 회사((주)디비고닷컴)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'14.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,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(月)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,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고 고지하고 실제로는 고지한 것과 다르게 혜택을 주는 등 허위과장으로 고지한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</p>

2014년 월 일

(주)디비고닷컴 대표이사 ○○○

3. 피심인은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,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,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,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되,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4.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5.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 이 유

## 1. 일반현황

-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 웹사이트(www.dbgo.com)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## 2. 사실조사 결과

- '14. 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으로 결제한 회원 3,872명에게 결제한 월(月) 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- 회원가입 화면에 “매월 무료문자 150건 공짜, 지금 디비고 무료 회원가입을 하면 365일 초고속 다운로드 100%무료” 혜택을 준다고 알리고 있으나, '14. 1월부터 5월까지 이를 보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8,783명에게 실제는 월 무료 문자 50건만 혜택을 주고 다른 혜택은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3. 위법성 판단

- 휴대폰으로 결제한 경우 결제한 월(月) 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및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고 고지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, 실제로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거나 고지한 것과는 다르게 혜택을 준 행위는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[별표4] 제5호 - 나목 - 제4호에 해당된다.

### <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>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금지행위”라 한다)를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
5. 이용약관(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 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)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<별표4: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>

5.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

나.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- 1)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- 2)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- 3)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- 4)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
- 5)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
## 4. 시정조치 명령

### 가. 금지행위의 중지

피침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,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.

### 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침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. 이때,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< 인터넷 홈페이지([www.dbgo.com](http://www.dbgo.com)) 공표 문안 >

제목	(주)디비고닷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내용	<p>저희 회사((주)디비고닷컴)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'14.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,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한 월(月)중에는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,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고 고지하고 실제로는 고지한 것과 다르게 혜택을 주는 등 허위과장으로 고지한 행위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4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주)디비고닷컴 대표이사 ○○○</p>

#### **다.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**

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으로 결제한 이용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, 결제를 할 때에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,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,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되,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#### **라.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**

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**마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**

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**5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**

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## 6. 결론

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14. 9.24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위 원 장

최 성 준



부위원장

허 원 제



위 원

김 재 홍



위 원

이 기 주



위 원

고 삼 석

